●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3. 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지방의원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

의안번호 302

Ⅰ. 건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김호진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나. 제 안 일 : 2018. 12. 28.

다. 회 부 일 : 2019. 1.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도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같은 법체계 안에서조차 상호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정수 110명 이하'로 4·5급 각 10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밖에 없어 최대 10개의 위원회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회는 매년 40조가 넘는 방대한 예·결산 심의의 중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외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없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처럼 지방자치법령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의 인력운영이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건의안의 타당성 검토

○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상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에는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은 대통령령(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59조).

○ 이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의원 정수에 비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② 및 별표 5).

<표 1>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이상 생략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 정수 110명 이하’에 해당되어 4·5급 각 10명, 총 20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별 전문위원 배치 현황(2019년 1월 기준)

구분	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교육	예산결산
4급	10	1	1	1	1	1	1	1	1	1	1	(공석)
5급	10	1	1	1	1	1	1	1	1	1	(대체)	1
계	20	2	2	2	2	2	2	2	2	2	1	1

※ 교육위원회는 임기제 5급 상당의 의안심사팀장이 5급 전문위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

○ 2019년 1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 제한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급 전문위원은 공석이고, 교육위원회 5급 전문위원은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의안심사팀장)이 그 역할을 대체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직급체계에 상응하는 적정한 직급 구성 및 정수 조정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여도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증원할 수 없어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음.

○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자치조직권에 기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의 본 건의안은 타당성과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8.12.31.)되었으나, 여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4·5급 각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해 위원회 간 형평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본 건의안의 내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건의안은 의정수요 변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자치조직권 확보 차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명	1명
3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40명 이하	8명 이내	6명	2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6명	4명
60명 이하	12명 이내	7명	5명
80명 이하	15명 이내	7명	8명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30명 이하	22명 이내	11명	11명
131명 이상	23명 이내	12명	11명

비 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